

2

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

작성 부서	작성일시
런던사무소	2022.7.27.

I 법안의 배경 및 경과

- 英 재무부(HM Treasury)는 '22.7.20일 금융서비스 시장법(안)(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, 이하 FSMB)을 의회에 제출
 - '00년 동 법 제정 이후 약 20년만에 가장 큰 폭(총 330페이지 분량)의 개정으로 '86년 금융빅뱅(규제 자율화)에 견주어 '빅뱅 2.0'으로도 명명
 - 英 재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금융서비스 규제 방향 정립 및 미래지향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'19년부터 2차에 걸쳐 Future Regulatory Framework(FRF) Review를 진행
 - * 1차는 의회와 정부, 감독당국간의 책임과 권한을 조정하고 금융규제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, 2차는 각각의 세부 과제별로 실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형태로 진행
- Nadhim Zahawi 재무장관은 법안과 관련한 연설을 통해 '개방, 경쟁, 친환경, 기술' 친화적인 금융부문 확립이라는 정부의 비전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고 강조하면서,
 - 英 금융서비스 산업을 'the most open, inclusive, welcoming, competitive, safe, and transparent'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언급
- 주요 특징으로 ① EU 법제로부터 독립된 Post-brexite 시대의 규제 정립 및 감독당국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·책임성 강화, ② 감독당국 목적 조항에 '성장파 경쟁력 촉진'을 추가하는 등
 -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정책과 금융규제가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

II 법안의 주요 내용

1. EU 입법사항 철회 · 수정

- Future Regulatory Framework(FRF)의 논의·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EU 회원국 당시 만들어진 다양한 금융규제 등에 대해 정비
 - Sections 3, 4 and 5에 걸쳐 EU 회원국 시절의 입법사항 및 EU 지침(Directives)에 대한 참조 조항 등을 수정 및 재작성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
 - 브렉시트 직전에 이루어진 EU 입법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석의 복잡성 및 수많은 상호참조 등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의 명확화 및 접근가능성 제고 등을 도모
 - 또한, PRA 및 FCA 등 감독당국에도 이를 뒷받침할 하위규정 제개정 권한을 위임

2. 감독권한 책임성 강화 및 목적조항 추가

- EU입법 정비 및 신규 감독이슈 대응 등을 위해 PRA·FCA 등 감독당국에 대해 규정 제개정 등 다양한 권한을 신규로 부여하면서 동시에 재무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
 - 감독당국은 규정을 정기적으로 재검토(review)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검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무부가 독립적인 3자로 하여금 감독규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(section 3RA)
 - * 재무부는 당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무부가 감독당국의 결정에 개입(call-in)할 수 있는 조항을 추진했으나, 감독당국에 대한 독립성 저해 논란이 일자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

- 감독당국의 2차적인 목적 조항으로 ‘성장과 경쟁력 촉진’(to facilitate the growth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UK economy)을 추가
 - 감독당국의 1차적인 목적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임을 명확히 했으나, 감독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은 지속

3. 감독기준- Solvency II 전면 개정

- EU회원국 당시 만들어진 Solvency II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‘Solvency UK’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
 - 주요 개정 필요사항으로 ① 보유계약의 제3자 이전시 발생하는 비용 (technical provision)에 반영되는 리스크 마진 축소, ② 자산-부채 매칭 조정 (matching adjustment)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범주 확대, ③ 동 과정에서 자산 디폴트나 등급 하락에 따른 리스크 조정값 (fundamental spread) 계산 방식 변경 등을 추진
- 이를 통해 보험사의 자본투자 여력을 높여 인프라 투자와 그린 전환 등 중요 국가과제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전략
 - EU 법제에서의 각종 보고, 행정처리 및 감독상 요구사항들을 정비할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대략 10~15%의 보험사 자본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
- ※ 건전성 당국인 PRA는 금융건전성 확보 측면과 과도한 자유화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증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

4. 자본시장(Wholesale markets) 감독 유연화

- 과거 법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재무부령이나 FCA 규정으로 위임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따라 ‘탄력적 대응’이 가능토록 변경

- 금융상품규정(MiFIR)을 개정(Article 4)하여 거래투명성 관련 조치 (post-trade transparency requirements)에 대한 판단 권한을 FCA에 부여
- 채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·사후 거래투명성 조치 관련 규정 제정권도 FCA에 부여
- ※ 자본시장의 경쟁력 및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'Wholesale Markets Review consultation'을 별도로 진행하고 세부 개선과제 도출 → MiFID II 의 주요내용을 수정

5. 금융시장 인프라기관(Financial markets infrastructure, FMIs) 규제 정비

- BOE 및 FCA에 FMIs에 대한 일차적 감독권한을 부여
 - BoE에 CCPs(중앙청산소, Central Counter Party)와 CSDs(중앙증권예탁 기관,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)에 대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하고, '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제3국가 CCP'를 지정토록 권한 부여
 - FCA는 데이터 보고 서비스 기관(Data Reporting Service Providers)에 대한 일차적 감독권한 보유
- 재무부에 금융시장인프라 기관(FMIs)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샌드박스(sandbox) 도입 권한 부여(Section 13)
 - 재무부 하위 입법을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정기간 테스트를 허용
 - 재무부는 해당 샌드박스 서비스의 테스트 결과를 감안하여 그대로 또는 특정 조건을 부과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 가능(Section 15)

6. 중요 외주업체(Critical third parties, CTPs) 감독 강화

- '중요한 제3자' 외주업체(CTPs)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 (Chapter 3C in Section 18)하여 재무부 및 감독당국에 규제권한 부여
 -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 전환·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IT서비스 업체, 특히 소수의 선도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집중위험(concentration risk) 증가
- CTPs가 제공하는 서비스 실패로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CTPs로 지정*할 수 있도록 규정
 - * 선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및 여타 규제대상이 아닌 금융중개기관 등 금융회사의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이 주요 대상
 - FCA, PRA, BoE 등 감독당국이 CTPs가 제공하는 중요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CTPs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
 - 규정 위반시 광범위한 조사, 지시 권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

7. 암호화 자산(crypto asset) 규제 선진화

- 디지털 결제자산(Digital Settlement Assets, DSAs)* 개념을 도입하고 재무부에 DSA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업자나 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(Section 22)
 - * 재무부가 기술발전의 정도를 감안하여 향후 디지털 결제자산의 정의와 범위 등을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규정
 - DSA는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가치와 권리가 디지털 증표로 표시되는 자산으로 ① 지급의무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활용, ② 전자적으로 전달·저장·거래 가능, ③ 데이터 기록·저장에 있어 분산원장 기술 등 기술적 지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

- 또한, 특정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여 영국 내에서 **활발한 결제 수단**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
 - 분산원장 및 암호화 등을 활용한 지급결제 혁신을 규제 영역으로 포섭하고 금융서비스 관련 디지털 혁신을 선도한다는 전략
- 영국 정부는 **FSB 및 CPMI-IOSCO** 등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검토 및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, **글로벌 논의가 진전**되는 사항을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간다는 방침
 - * 22년말경 결제수단(stablecoin) 및 투자수요(Bitcoin) 등을 포함한 암호화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consultation 진행 예정

8. 금융사기(APP scams) 피해자 보호

- **APP scam 사기피해자 보호**를 위해 지급결제감독원(PSR, Payment Systems Regulator)이 **피해금액 반환(reimbursement)**을 위한 요건 검토 및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(Section 61(1))
 - * 그동안 재무장관은 Authorised push-payment(APP) scams 피해자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
 - 또한, 재무부의 관련 규정 제정권과 함께 지급결제감독원(PSR)의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
 - * (Section 102A) 재무부는 PSR에 대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목적 및 감독기능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

9. 금융서비스 홍보(financial promotions) 관련 감독 강화

- 금융회사가 영국 당국의 허가가 없는 제3자의 금융서비스 홍보 내용을 사용할 경우 **FCA로부터 사전허가**를 받도록 변경(Section 55NA)
 - * 과거 규정(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(Regulated Activities) Order 2001)에서는 해외 계열사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도 영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이 가능

- 위험한 금융상품이 적절한 수준의 통제·감시 없이 영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

10. 현금 사용(access to cash) 접근성 확보

- 디지털 결제 증가에도 현금결제 수요가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무부가 현금 입출금 서비스에 관한 정책(statement)을 세우고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(schedule 8)
- 재무부는 현금을 예금·인출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규정
- FCA는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적으로 현금 예금·인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형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한을 담당
- BoE에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현금 관련 산업 동향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

11. 순배출량 제로(net zero) 목표 반영

- 기후변화법(Climate Change Act 2008)에서 정한 영국의 '순배출량 제로(net zero)'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부문의 기여 필요성을 법안에 명시(Section 25)
 - 감독당국(PRA, FCA)의 규제 원칙(regulatory principles)을 나열하고 있는 조항(FSMA Section 3B)에 동 내용을 추가
- * the desirability of sustainable growth in the economy of the United Kingdom in the medium or long term, including in a way consistent with contributing towards achieving compliance with section 1 of the Climate Change Act 2008 (UKnet zero emissions target)

III

향후 법안 논의 전망

- 정부가 제출한 법안(Bill)은 의회(Parliament)의 하원(House of common) 및 상원(House of Lords)에서 각각 3차에 걸친 검토(reading)와 토론이 이루어진 후
 - 최종적으로는 왕실의 재가(Royal Assent)를 거쳐 법(Act)으로 확정
- 법안이 의회의 하계 휴원 하루 전에 제출됨에 따라 하원의 검토 및 토론 등은 9월 이후에 가능하며,
 - 감독당국에 대한 '성장·경쟁력' 목표 신설 및 재무부의 감독당국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도 다수 있어 실제 법안 논의 과정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

3

英 감독당국 중요 외주업체 복원력 감독 방안 마련

작성 부서	작성일시
런던사무소	2022.7.30.

I 추진배경

- 금융회사의 중요 외주업체(CTPs, Critical Third Parties)는 서비스 중단시 소비자 피해 및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시스템을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사업자로
 - 최근 CTPs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
- 英 재무부는 소수의 CTPs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
 - 금융서비스시장법(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Bill)에 CTPs의 복원력(resilience)을 감독하는 권한을 감독당국에 부여함에 따라

→ BoE, PRA, FCA가 공동으로 CTPs 복원력 감독방안을 마련

II 중요 외주업체 복원력 감독 방안

1. 중요 외주업체(CTPs)의 식별

- 감독당국은 제공 서비스(시스템)의 중요성 및 집중도와 함께 잠재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CTPs 지정
 - 중요성(materiality) :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 또는 중요한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

<PRA 지정 핵심 기능 목록(Economic functions listed in SS9/13)>

- (예금수취 금융회사) 소매 입출금, 소매 저축, 중소기업 계좌 서비스 등
- (대출 기관) 주택담보대출, 소매 신용 카드, 담보대출 서비스 등
- (자본시장 및 투자회사) 파생상품, 거래 포트폴리오, 자산 관리, 보험 등
- (지급결제, 청산, 관리) 지급결제, 청산, 현금 서비스 등

○ **집중도(concentration)** : CTPs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기관의 수와 유형을 고려

- 서비스 장애 및 중단시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파급력 (비중요 서비스라도 대다수 금융회사가 이용하고 있다면 전체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는 점) 고려

<집중도 예시>

- 집중도 고려 요건이 주택시장점유율 25%인 경우
- 주담대 시장 점유율 Bank A 16%, Bank B 11%, Bank C 11%, Bank D 9%
- Bank A와 Bank B에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CTP 지정 고려

○ **잠재적 충격(potential impact)** : 장래에 금융회사들에게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여부 고려

-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위험 (aggregation risk)과 대체 회사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 대체 가능성(substituability) 등을 평가

2. CTPs 최소 복원력 기준(minimum resilience standard)

- CTPs가 중요 시스템의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
 - ①(식별, Identification) 금융 안전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식별하고 문서화
 - ②(맵핑, Mapping) CTPs는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, 기술, 인력, 프로세스와 정보를 식별하고 문서화
 - ③(위험 관리, Risk management) 공급망 및 적절한 통제조치 등 중요 서비스에 위험이 될 요소를 식별
 - ④(테스트, Testing) 정기적으로 중요 서비스의 복원성을 점검(자가 점검 및 감독당국 요구에 따른 점검)
 - ⑤(감독당국 서약, Engagement) 선제적으로 감독 당국에 사고 및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등을 보고
 - ⑥(금융 부문 연속성 Playbook) 중요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세 방안을 개발하고 테스트
 - ⑦(사고결과 보고, Post-incident communication) 금융회사, 금융 인프라기관, 감독당국 등에 중요 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 발생시 협력(보고) 체계를 수립
 - ⑧(개선 및 발전, Learning and evolving) CTPs는 시스템 장애 및 사고들에서 얻은 경험을 학습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과 공유

3. CTPs 복원력 테스트 방안

□ CTPs는 중요 시스템의 복원력에 대해 체계적인 테스트를 통해 복원력을 측정, 평가, 검증하고 개선

①(시나리오 테스트) 시나리오 상황별 중요 시스템의 장애 및 중단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사건이 전반적인 위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CTPs의 능력 점검

<중단 상황 예시>

- CTPs 또는 CTPs의 공급채널의 문제에 따라 발생한 중단
- 침수, 지진 등 재해에 의해 데이터 센터 붕괴 등 중단
- CTPs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한 시스템 중단 등

②(광역 훈련 Sector-wide exercise) 다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기관이 참여하여 CTPs의 서비스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 부문 통합 대처 훈련

③(사이버 복원력 테스트) 가상의 사이버 공격자가 중요 시스템에 대한 모의 공격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

④(전문가 검증 Skilled persons' review) 감독당국은 외부 전문가 (Skilled persons)를 이용하여 CTPs가 운영하는 중요 시스템의 복원력을 점검토록 하고 보고를 받음

III 향후 계획

□ '22.12월말까지 시장참여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 확정 예정

◇ 참고자료

- Bankofengland, Operational resilience : Critical third parties to the UK financial sector(DP3/22)